

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함제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56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16일  
발 의 자 : 성함제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경우, 김재형, 문장길,  
이상훈, 임종국, 전석기,  
최 선, 최응식, 황규복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우대)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9조(무료관람)에 따른 무료관람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미술관 무료관람 가능 대상에 서울특별시 ‘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’를 포함토록 함. (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,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0호의 호 번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9조(무료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0.</u>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9조(무료관람)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</u></p> <p><u>11.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문서번호

2021012900000028

## 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성흠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민향식 팀장  
노이안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1.29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10-2326-1900

#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주개정조례안 제9조(무료관람) 제 10호를 신설하여,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어 세입감소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△1,985,970천원

- 예상되는 세입감소가 5년 동안 △1,985,970천원으로, 연평균 △397,194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할 시 비용(세입감소) 발생
  -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병역명문가 가문의 수는 총 1,351가문으로,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2.45명을 가정했을 때(2020년 12월 말 기준 병역명문가 가문 및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), 월 1회 미술관 방문, 최근 특별전 입장료 10,000원 가정
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(합계) ≙ △1,985,97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    |        | 1차년도     | 2차년도     | 3차년도     | 4차년도     | 5차년도     | 합계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| (2021)   | (2022)   | (2023)   | (2024)   | (2025)   |            |
| 세입          | 사용료 수입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1,985,970 |
|             | 소계(a) 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1,985,970 |
| 세출          | -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|
|             | 소계(b)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|
| □ 총 비용(b-a) |       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397,194 | △1,985,970 |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예산분석팀장 민향식

분석관(주무관) 노이안

☎ 010-2326-1900

e-mail : 78901@seoul.go.kr